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
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운영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·정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5조)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지명의 유형과 예시에 대하여,
 -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시 적용할 기본원칙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우리구 지명 선정시 금천구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
- 참고로 경기도 오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경기도 의정부시는 입법예고 중입니다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